

Premium Report 제19호
(2016. 1. 31)

재난방송 수신설비 관련법령 개정 및 시사점

 **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**

작 성 자 : 김희정 책임연구위원

내용문의 : [Tel.] 031-231-3422 / [Email] hkline@kici.re.kr

○ 검토의 배경

-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전반의 안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이 이루어짐
- 법령개정을 바탕으로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 의무화 확대가 시행되는 경우 관련공사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
-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난방송 관련법령 중 공사수요발생과 관련될 수 있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함

○ 재난방송의 개념

- 본래 재난발생 상황을 보도하는 중계방송을 의미
- 넓은 의미에서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예보, 경보, 주의보, 특보 및 사후 재난상황인 복구·구조에 대한 정보제공도 포함됨
- IPTV, 위성, 케이블, DMB, 문자방송, 소셜 네트워크(페이스북, 트위터) 등 다양한 플랫폼을 재난방송용으로 활용 가능

○ 공공방송플랫폼의 재난방송 활용

- DMB, FM 라디오 등 공공방송 확충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가능
- 공공방송을 통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국민도 재난방송 수신가능
- 2011년 일본 지진 발생 시 DMB 서비스 'One Seg'는 중단없이 재난방송을 송출하며 인명구조에 공헌, 지상파 DMB가 재난방송에 적합한 매체임을 보여줌

○ 재난방송수신설비 구축의 중요성

- 국민들이 재난방송을 적시에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**재난방송설비 및 인프라 구축**과 이를 위한 투자확충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
- TV시청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개선, 터널 등 방송수신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설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

-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① 개정(2015. 12. 22)
- ▶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 범위 확대
 - ☞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만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으나, 보도기능을 하지 않는 플랫폼사업자인 **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, 위성방송사업자, IPTV 사업자** 추가

➤ (참고자료)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(재난방송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에 따른 재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「민방위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·구조·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(이하 "재난방송등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2.>

1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
2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**종합유선방송사업자**
3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**위성방송사업자**
4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)
5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**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**

○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② 개정(2015. 12. 22)

▶ 공식적인 재난방송 개시시점 명확화

☞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**‘재난사태의 선포’, ‘재난예보·경보의 발령’, ‘민방위경보의 발령’ 시까지**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 및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

➤ (참고자료)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(재난방송 등)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,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·대피·구조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5.12.22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**재난사태의 선포**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**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**
3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**민방위 경보의 발령**(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○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(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) 신설

(2014. 6. 3)

- ▶ 도로,터널,지하공간에서 각 시설주체가 **FM라디오와 지상파 DMB**로 재난방송 수신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국가예산으로 수신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☞ **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사업 실시**

- 2015년 시범사업으로 총 26개 터널 40대의 중계설비 설치 지원
- 2016년 지원사업에 9억 600만원으로 예산책정

➤ (참고자료)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(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)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,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(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)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·민방위경보방송 및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**라디오방송**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
2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**이동멀티미디어방송**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

○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(2015. 8. 4)

▶ **지하층의 재난방송 수신방안 마련**

☞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등에서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지상파 DMB 공동수신설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

➤ (참고자료) 「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」 주요 개정내용

- (제2조1의2호 등) 지하층에 설치되는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신속한 방송수신이 가능한 DMB 설비 추가
 - "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"이란「방송법」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, 에프엠(FM)라디오방송, **이동멀티미디어방송** 및 위성방송(이하 "지상파방송, 위성방송"이라 한다)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·선로·관로·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
- (제2조의 11의2호 등) 세대별 인입을 위해 각 층에 설치하는 층 장치함의 설치범위를 지하층 등으로 확장
 - "층 장치함"이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통신 선로 등에 공용하여 각 세대별 또는 지하 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(지하층 포함)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.
- (제11조 및 별표2) DMB방송설비 추가에 따른 신호처리기 및 중계기 설비 규격 신설

-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의3(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)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·터널·지하공간의 재난정보 및 민방위경보방송 수신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(RAPA)가 2015년 5월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전수조사 실시
- 총 3,026개소 대상(도로터널 1669개소, 철도터널 621개소, 지하철터널 736개소)으로 각 터널 내의 DMB(KBS, MBC)과 FM 라디오(KBS 제1FM, myMBC)에 대한 방송수신 여부 측정
- 실태조사 결과
 - 재난방송주관사인 KBS기준으로 총 설치 중계기 5,178개 중 DMB는 83.5%(2,528개소), FM라디오는 87.5%(2,650개소)가 각각 터널 내 방송신호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
 - (철도터널) DMB 98.9%(614개소), 라디오 98.1%(609개소)가 수신이 불량하여 사실상 철도터널에서 재난 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

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

- (도로터널) DMB 90.7%(1514개소), 라디오 95.5%(1587개소)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됨
- (지하철터널) 철도터널이나 도로터널보다는 수신실태가 양호하였으나, DMB 54.3%(400개소), 라디오 61.7%(454개소)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됨

< 표 1 > 재난방송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(KBS DMB 및 FM라디오)

번호	구분	① 터널수	KBS DMB		KBS FM 라디오		총 중계기대수
			㉠수신양호	㉡수신불량(%)	㉢수신양호	㉣수신불량(%)	㉤+㉥
	계	3,026	498	2,528(83.5)	376	2,650(87.5)	5,178
①	도로터널	1,669	155	1,514(90.7)	82	1,587(95)	3,101
②	철도터널	621	7	614(98.9)	12	609(98.1)	1,223
③	지하철	736	336	400(54.3)	282	454(61.7)	854

(자료) 방송통신위원회(2015b)

○ (공사수요 확대)

-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재난방송 수신설비확충 등 수신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사업계의 추가적인 공사물량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

< 표 2 > 재난방송 수신설비 관련법령 주요 개정내용

구분	주요 개정 내용
방송통신 발전기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도로터널, 철도터널, 지하철터널 등 재난방송 수신음영지역에서 DMB를 재난방송매체로 의무화 ●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
방송 공동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긴급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등의 지하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의무화 - 지하층에 설치되는 방송공동수신설비에 DMB설비 추가 - 층장치함의 설치범위를 지하층 등으로 확장 - DMB설비 추가에 따른 신호처리기 및 중계기 설비규격 신설

○ (기술 및 시공기준 준수)

- 재난방송 설비공사에 요구되는 기술 및 시공기준 제규정을 명시한 관련규칙,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

※ 관련규칙, 고시, 가이드라인: 「무선설비규칙」, 「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」, 「접지설비, 구내통신설비,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」 「재난방송용 DMB 중계설비 설치 가이드라인」 등

○ (사회적 기여)

- 재난방송 인프라구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조
- 공사업계의 성장추구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
- 국가법령정보센터(2016a). 방송통신발전기본법.
- 국가법령정보센터(2016b).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.
- 국가법령정보센터(2016c).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.
- 미래창조과학부(2015). 「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, 2015. 5. 11.
- 방송통신위원회(2014). 방통위, 효율적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, 2014. 12. 10.
- 방송통신위원회(2015a).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, 보도자료, 2015. 12. 1.
- 방송통신위원회(2015b). 방통위, 국내최초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실시, 보도자료, 2015. 12. 22.
- 이데일리(2014). 'DMB 재난방송 의무화법' DMB 6사 '재난 안전 캠페인' 확대, 2014. 5. 23.
- 정보통신정책연구원(2015). 재난방송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, KCC-2014-39.